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7. 29.
발의자 : 고용진 · 강창일 · 김영춘
김종민 · 맹성규 · 소병훈
신창현 · 유동수 · 윤관석
이학영 · 전해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비롯한 「보험업법」, 「상호저축은행법」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,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.

그런데 「상호저축은행법」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현행법은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

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9조제4항 신설).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까지에”를 “제5항까지에”로 한다.

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9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</u> <u>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</u> <u>한 은행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</u> <u>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
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<u>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</u> <u>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</u> <u>니한 경우</u>	⑤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
2. ~ 8. (생 략) ⑤ 제1항부터 <u>제4항까지에</u>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	2. ~ 8.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<u>제5항까지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